



## 전 주 교 도 소

수신 [REDACTED] 이병진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2013-283, 이의신청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귀하의 정보공개청구(2013-283, 2013.11.21)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이병진 (전주교도소 수용중, [REDACTED] 번)

접수번호	2013-283(이의-11)	접수일	2013. 11. 21
------	-----------------	-----	--------------

이의신청 내용  1. 서신검열 절차는 법으로 명시한 행정절차임  
2. 서신 검열 후 본인에게 알려주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음

귀하께서 청구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안내합니다.

본건과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비공개한 부분 및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바,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신검열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법규에 명시한 행정절차에 따라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규에 명시한 행정절차에 모두 담지 못한 실무적인 행정 절차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된 행정규칙(지침·훈령·예규 등)을 근거로 서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특히 공안사범 수용관리 및 교화업무 관련규정은 비공개 대상이며,

2. 청구인의 주장근거인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5항(청구인은 제65조 제5항으로 오기)에 따르면,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서신을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115건 서신 검열한 후 검열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였으므로 검열사실을 비공개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와 관련하여 비공개 대상이므로 기각 결정합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귀과 ☎ 063-224-4361(내선606)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	-------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수수료 산정 내역		원	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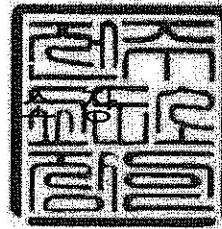
2013년 11월 28일

##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

전주교도



책임관 협조자	주수기	책임관 오원종	과장	손병은	소장 최효숙	2013. 11. 28.
------------	-----	------------	----	-----	-----------	---------------

시행 사회복귀과-3146 (2013. 11. 28.) 접수

우 560-71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99) 사회복귀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63-224-4361 팩스번호 063-223-4302 / [jusuki@moj.go.kr](mailto:jusuki@moj.go.kr) / 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